

국문서기  
사무장  
최정석

영양군수관

신시  
영양군수관  
최정석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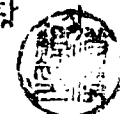


부  
시  
장



부  
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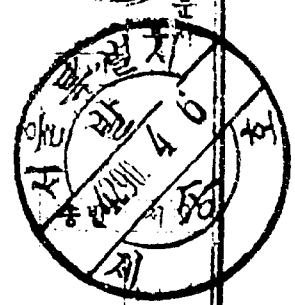
부  
국  
장



국  
장

국  
장

문  
서  
기  
인  
자



호반계관

전 명문서성안상 주의에 관한 건

부  
시  
장

각  
국  
과  
장  
전

제  
반  
결  
과  
서  
류  
중

국문서기

161

성안서유류 <sup>문헌실도유</sup>왕왕 불비 사항이 발견  
<sup>문헌실도유</sup>문서처리 상지장이 불소하오나

좌기 사항을 각별 유의 하여 자금지사한  
시료가 없도록 세부하 지원 이계 철저하

시달히시기 의명 통첩 함

기

—문서의 기안은 당시 처무 규정 제33조 규정  
에 의하여 공문처리 용자례에 의하여

간이르러 위주로 하고 해서 또는 행서의 서체  
로서 기안한다

二 위임 전결 규정의 위하여 부시장 국장  
및 과장 의결책으로서 끝나는 성안에는

二 위임 전결 의도장으로 보나 시정일 것  
二 위임 전결 사항의 성안에는 그 소관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좌의 구분으로  
하되 기안용지 상단에 감은 방정식으로

場所指定  
二  
二

타지정일 것

부시장

구분된 고무도장을 찍을 것.

1. 갑은 시장결재를 호하는 서류

2. 을은 부시장의 임전결사항

3. 병은 구장위의 임전결사항

4. 정은 과장의 임전결사항

추신 갑은 병·정·의 고무인은 일괄하여

충무과에서 조각배부 하겠사옵기

귀념 참신함

169